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10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가. 상위 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제2항 및 제74조, 제75조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추가  
-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## 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」 제73조제2항 및 제74조, 제7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2. 10. 11. ~ 2012. 10. 31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권고의견 반영

- (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분석과-3541호, 2012.9.21.)에서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
- 3)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이상없음.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.
- 5)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

제1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- 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⑥ (생 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	<p>제6조(기금의 용도)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</u></p> 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</p> <p>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